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여부에 대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게 되는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21.7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관계공무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실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4조 제4호의2)

나. 법 제11조제2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안 별표5)

다.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안 별표5)

라.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법에서 위임한 ‘금융 관련 법률’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의6, 별표 1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5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별표 1의2에 규정된 법률을 말한다.

제1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도로법」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만 해당한다)

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자목1)의 과태료 금액란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1)의 과태료 금액란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 중 카목부터 초목까지를 타목부터 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 제6호의2	300만원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관계 법률

(제11조의6 관련)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보호법」
3. 「공인회계사법」
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6. 「공중 등 협박목적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0.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5. 「금융지주회사법」
1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7. 「기술보증기금법」

1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19.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2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22. 「농업협동조합법」
23. 「담보부사채신탁법」
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7.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9. 「보험업법」
30. 「부동산투자회사법」
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2. 「산림조합법」
33. 「산업발전법」
34. 「상호저축은행법」
35. 「새마을금고법」
3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37. 「선박투자회사법」
3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39. 「수산업협동조합법」
40. 「신용보증기금법」
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2. 「신용협동조합법」
43. 「여신전문금융업법」
44. 「예금자보호법」
4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6. 「외국인투자 촉진법」
47. 「외국환거래법」
4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49. 「은행법」
50.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5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5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5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56. 「전자금융거래법」
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59. 「주택법」
60. 「중소기업은행법」
6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6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6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6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66. 「한국산업은행법」
- 67. 「한국수출입은행법」
- 68. 「한국은행법」
- 6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7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71. 「한국투자공사법」
- 7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7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74. 「형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
 - 가. 「형법」 제207조 내지 제208조를 위반한 경우
 - 나. 「형법」 제212조(같은 법 제207조 내지 제208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하는 다)를 위반한 경우
 - 다. 「형법」 제213조를 위반한 경우
 - 라.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를 위반한 경우
 - 마. 「형법」 제223조(같은 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하는 다)를 위반한 경우
 - 바. 「형법」 제224조(같은 법 제214조 내지 제215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하는 다)를 위반한 경우
 - 사. 「형법」 제347조 내지 제348조 및 제348조의2를 위반한 경우
 - 아. 「형법」 제352조(같은 법 제347조 내지 제348조 및 제348조의2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 자. 「형법」 제355조 내지 제357조를 위반한 경우
 - 차. 「형법」 제359조를 위반한 경우
- 7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규정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내지 제356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경우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경우

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76. 제1호 내지 제75호에 해당하는 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4. (생략) <u><신 설></u> 5. 삭제 6. ~ 23. (생략)	<u>제11조의6(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5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별표 1의2에 규정된 법률을 말한다.</u> 제14조(권한의 위임)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도로법」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만 해당한다)</u> 6. ~ 2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4022